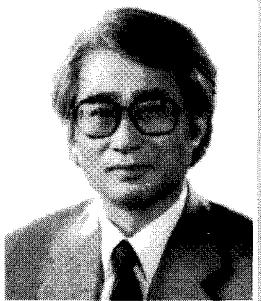


# 공정거래제도의 운영방향



박 길 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공정거래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이므로 이 시기에 고양된 국민의 관심을 잘 활용한다면, 공정거래제도가民間에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여 공정거래문화라는 뿌리 깊은 나무로서 안팎의 사정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 ① 머리에

올해로 성년을 맞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제정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으나, 선진적인 공정거래제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의 공정거래제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적 기반이 되는 공정거래문화를 선진화시키는 일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서 공정거래문화라 함은 공정거래제도뿐 아니라 공정거래의 민간인프라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며, 공정거래의 민간인프라는 공정거래 관련 학문, 공정거래 전문인력 및 업계와 소비자를 포함하는 민간 전체의 공정거래의식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공정거래제도

의 개선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고, 이어서 공정거래민간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② 공정거래제도의 개선 및 운영방안

### (I) 기업구조조정의 강력한 시행

IMF 이후 겨우 회복국면에 들어가던 우리 경제는 작년 말부터 다시 위기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현재의 경제난국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시장원리를 확립시키는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는 경영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선단식

경영의 주요수단인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고,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며,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부당내부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말 계좌추적권의 시한 연장과정에서 나타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실로 각별한 것이다. 위원회가 2년 연장을 요구한 데 대하여 국회가 오히려 여야합의로 3년 연장을 의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입법부가 나서서 보여준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지지를 발판으로 시간을 다투는 구조조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2) 소비자주권의 확립

소비자는 공정거래제도의 궁극적 수혜자인 동시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한 감시자로 기능할 수 있다. 먼저 소비자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제도 운영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모니터제도라든가 공정거래여론조사회 원체도 외에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소송제도(동법 제56조 이하)가 활성화된다면 소비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감시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정조치 선확정제도(동법 제57조 제1항)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의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충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술한 손해배상소송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제도에 의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은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아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자금지원 위주의 정책과는 달리 경쟁력강화 위주의 정책은 시장의 중소·벤처기업이 시장의 겸증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사업자간의 협력을 조장하는 선진국의 공정거래제도를 받아들여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촉진적인 협력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비록 중소·벤처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쟁체한적 결합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이를 엄단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풍토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4) 경쟁규범의 국제화에 대한 대처

경쟁규범의 국제화는 국제적인 공정거래규범의 형성,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외국 기업에 대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앞의 두가지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공정거래규범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개선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외국 기업에 대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국제계약의 체결체한에 관한 규정들(동법 제32조 이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들은 내국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전이나 투자를 억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차별적인 특칙을 두기보다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통합하는 방식으



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정보화에 대한 대처

위원회는 작년 초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정보화시대의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의 약관규제 등 이 방면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질서를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3 공정거래 민간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제언

### (1) 공정거래 관련 학문 연구의 지원

우리의 목표가 국제수준의 공정거래문화를 일구는 것이라면 그것은 풍부한 학문적 성과의 집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학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적 학문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공정거래 관련 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정거래 관련 학회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학문 연구는 학회 활동을 통해 방향을 잡고 그 성과도 학회활동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회의 지원이 학회간의 학제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면 단위학회 차원에서 이를 수 없는 시너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정거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다. 공정거래에 관한 연구는 경쟁이론·경쟁정책 및 경쟁법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괄하는 매우 독특한 분야로서 독립적인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2) 공정거래 민간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따라 위원회의 범·집행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조직 확대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행정지원의 절대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행정지원 부족을 보완한 수 있는 민간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 도입을 시도했던 공정거래사제도가 바로 이러한 제도이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다. 만약 타직역과의 관계가 문제라면 우선은 민간자격증으로서의 공정거래사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 후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제도를 통하여 공인자격화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에 법제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 민간전문인력의 양성은 기존 변호사들 중에 공정거래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소송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변호사업무의 중심이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대폭 이동하면서, 기존의 변호사들을 공정거래 민간인프라에 대거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업계의 공정거래의식의 고양

그간의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정이 위원회의 선도적 노력에 의한 하향식 개혁에 주로 의존해 왔기 때문에 업계의 공정거래의식이 법제도와 보조를 맞추어 성장하지 못한 면이 있다. 업계의 공정거래의식을 고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거래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위원회와 적극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업계의 구석구석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에 말한 공정거래사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은 단지 위원회의 민간측 대리집행자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측의 바램과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전달해 주어 위원회가 경쟁정책을 업계의 현실에 맞추어 재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원회와 업계의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도 각종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와 업계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정례적인 의사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자, 변호사, 행정관료 등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쟁법에 관해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교환을 행하는 단체인 유럽 경쟁법 연구회(Working Group for European Competition Law)가 이러한 의사소통 창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경쟁법 연구회는 1958년 설립된 이래 매월 비공식회합을 가져오고 있으며, 1992년에는 300회의 회합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셋째, 위에 말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소송제도가 활성화되면 업체들이 위원회의 법 집행에 대한 방어일변도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정거래법을 무기로 경쟁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업계가 공정거래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넷째, 공정거래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의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보도자료의 배포나 인터뷰 이상의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4) 한국공정거래협회의 기능 강화

이와 같이 공정거래의 민간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한국공정거래협회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협회는 민간업계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공정거래정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 등 업계와 교량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와 주요기업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기업체 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어 위원회의 민간측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 연구기관의 운영, 민간자격증으로서의 공정거래사제도의 시행 및 대민홍보의 수행 등에 있어서 주관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으며

올해는 공정거래법 시행 20주년을 맞는 기념 할만한 해이다. 공정거래에 대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금년은 공정거래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건설하는 데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고양된 국민의 관심을 잘만 활용한다면 다른 시기에 여러 해를 걸어야 할 길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달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공정거래제도가 민간에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국민들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안팎으로 사정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제도라는 나무는 단지 화분 속의 분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문화라는 뿌리 깊은 나무로서 꽃을 피울 때 참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